

## 食品에 關한 PL과 日本에서의 技術士의 PL業務의 展望

本田 尚士\*

製造物 責任法이 1995年 7月 1日 施行되어 여기 까지 準備對策에 허겁 기업은 이제 PL 實務에 對應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여기에 따라 技術士의 業務도 自然히 그 內容이 變化하고 있다. 比較的 多發한다고 생각되는 PL業務 가운데 食品分野에 대하여 技術士가 알아두어야 할 點을 列記하고 더한 日本에서의 今後 豫想되는 技術士의 PL業務는 이러한 點이 主體를 차지하는 가에 대하여 展望하고 싶다.

### (1) 食品에 關한 製造物 責任에 대하여

#### ① 食品에 關係하는 PL의 特徵

a) 被害者가 同시에 多發의 으로 發生한다.

어느 lot에 문제가 생기면 lot의 製造 갯수만큼 廣域의 으로 問題가 發生하는 可能性이 있다.

b) 食品 衛生法은 規制가 严하다.

Food의 安全性에 대한 配慮에서 많은 規制가 있어 이것을 clear하여 가지 않으면 안된다.

c) 特異體質에 의해 被害가 생긴다.

allergy 等 特異體質에 의한 被害가 생길 可能性이 있다. 이것 등의 蓋然性을 事前에 考慮하여 警告의 必要性에 대하여 檢討하여야 한다.

d) 流通이 複雜하여 責任者の 特定이 困難하다.

도시락 등 多種의 組合에 의해 構成될 때에는 責任의 所在가 複雜하고 流通過程에 있어서의 變質의 問題도 考慮하여야 한다.

e) 特殊 分野를 目的하는 新製品이 多數 出現하고 있다.

機能性 食品, 健康 食品 등이 나타난다.

f) 動物用 飼料의 被害는 廣範圍하게 되고 동물의

價格은 高價이다.

pet用 食品 등은 cost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는 問題가 있는데 被害가 우려되는 對象動物 등은 高價이다.

g) 蓄積性·後遺症이 문제가 된다.

攝取時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豫想된다.

h) 期限表示의 改正

劣化速度가 빠른 食品은 “消費期限”을 比較的 緩慢한 食品에 대하여서는 “品質保持期限”을 表示한다.

② PL 問題가 多發한다고 豫想되는 場所

a) 食品 自體에 關한 것.

變質, 微生物 汚染, 有害物 混入, 添加物 不良 등 食品 自體에 問題가 있다.

b) 容器·包裝에 關한 것.

有害物 溶出, 破裂, 缶 등의 傷한 곳 등 包裝에 關한 問題가豫想된다.

c) 補助 物質에 關한 것.

乾燥劑, 酸素 除去劑, 景品 등이 安全을 害칠 때가 있다.

d) 警告·表示에 關한 것.

成分, 添加物, 效用, 保存法 등의 表示가 適切한 것인가가 問題로 된다.

e) 明示의 保證違反

最高, 世界一, 永久, 萬病 通治 등 사실과 反하는 우려가 있는 表示는 要注意이다.

③ 食品에 關係되는 PL의 認證의 困難程度

a) 缺陷과 損害와의 因果 關係의 認證

같이 먹은 다른 關聯 食品과의 관계에 있어, 單一

\* 化學 部門

食品에 의한 缺陷이라 判斷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b) 본래의 製品 特性은 缺陷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utter, ice cream, milk 등의 脂肪分, 된장, 간장 등의 鹽分, 酒類 등에 含有되는 alcohol 등 본래의 食品 特性이라고 생각되는 成分에 의한 損害는 缺陷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警告는 필요 할 때가 있다고 생각된다.

c) 食品은 適性 使用을 期待하고 있다.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使用을 前提로 製造되어 있음으로 그 이외 일 때는 對應 困難으로 될 것이豫想된다.

d) 摄取者의 體質이나 健康 狀態 등의 完全한豫見은 곤란하다.

allergy, 特異 體質 모두를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 經濟性의 制約이 있다.

cost performance의 點에서 생각하여 食品은 그렇게 高價인 것만은 아니다.

f) 도시락, 怨萎등, 複數의 組合일 때

많은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 등을 채워 넣을 때 어느 것이 缺陷이 없는가를 特定하는 것이 곤란 할 때가 있다. 또 微生物이 어떠한 원인으로 増殖하였는 가의 判定은 어렵다.

(2) 日本에서의 今後豫想되는 技術士 業務

① 總合 安全體 策定備를 위한 支援 業務

從來부터 해오던 업무로서 기업의 PL 體勢 整備의 支援 業務가 있다. 具體的으로는 各種 세미나의 講師로서의 업무, 商工會議所 등의 相談員 업무, 個別 企業의 體勢指導 業務 등이 있다.

특히 일본의 기업이 늦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取扱 說明書, 警告 lebal 등의 作製指導 業務 등이 점차로 增加 할 것이다. 從來는 제품의 效能 PR型이었던 取扱 說明書의 危險을 調和시킨다는 主眼으로서 써야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從來 일본 국내의 中소기업은 明確한 契約書를 주고받은 습관이 定着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PL

法 4條 2項의 免責條件은 原材料 部品의 發注側, 受注側 雙方에 명확한 契約의 必要性을 認識시켰다. 이 때문에 契約書 原案을 檢討한다는 業務 依賴가 增加하여지고 있다.

設計·製造·表示 등에 관한 缺陷을 除去하고 社內의 品質保證 體制를 整備 確立하는 것은 단지 PL뿐만 아니라 기업의 體質 改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 迅速·確實한 被害 救濟의 대책을 常時 가지고 있는 것이 事故 發生時의 對應을 위해서도 꼭 필요 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製版外 紛爭 處理 體制에 관한 技術士의 役割  
製造物 責任에 관한 事件이 全部 裁判所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대부분이 裁判外 紛爭 處理機關에 가게 되어 여기에서 調停不能한 것만이 最終적으로 裁判所에 보내진다고 생각된다. 裁判外 紛爭 處理에 관한 技術士의 役割은 크다고豫測되는데 이것은 다음의 通達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

1994年 10月 通商產業省 商務流通 審議官에서 「製品 分野別 裁判外 紛爭處理體制의 整備에 대하여」의 通達이 나왔다. 紛爭處理體制의 組織 方法 중 相談·斡旋 組織의 構成은 어려운 處理 實務의 經驗者 및 製品 關聯 技術者の 專門家를 事務局의 構成員으로 包含시키도록 정해져 있다. 調停의 panel로서는 法律關係의 有識者(辯護士 資格을 가진者, 裁判官 經驗者, 辯護士 등), 技術關係의 有識者(當該 製品 分野의 技術에 밝은者; 大學 教授, 技術士, maker 技術者の OB 등), 消費者 問題의 有識者(消費生活adviser 등)의 각個에서 1名以上 參加할 것을 바라고 있다.

③ 原因究明 關係에서의 技術士 役割

製造物 責任法은 賠償 請求의 要件으로서 缺陷과 損害의 因果 關係의 立證을 原告側에 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技術的으로 잘 알지 못한 消費者 등에 있어서는 큰 일이다. 이 때문에 消費者 등에 대하여 이것을 行하는 것이 原因 究明 關係이다. 經濟企劃廳의 「製品 事故에 있어 原因究明 機關에 관한 聚

急調査」報告書에 있어서民間原因究明機關으로서技術士制度 및 技術士의 現狀을 폭넓게 설명하여 技術士會의 事務局 및 각 支部의 所在 등을當局은 調査하고 있다.

日本損害保険鑑定人協會와 오랫동안 檢討한結果 PL業務에 관한 覺書를 交換하여 損害保険會社에서 依賴된 PL의 原因究明業務에 대하여 서로協力할 것으로 하였으며 損害保険의 賠償에 대한

原因究明의 保險會社의 依賴도 점차增加되고 있다.

이상 현재 日本 技術士의 製造物責任法施行에 따라豫想되는 業務의 概要를 紹介하였다.

객관적인立場에서 技術士가 社會의 要請에 應하여活躍할 때 점차로 피어나는 현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림 및 도표는 편집상 대부분 생략하였음. 자료는 본회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음.〉